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노형욱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 위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후보지에 토지 등을 구입하는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이주자택지 전매제한 특례대상 제외(안 제13조의3제1호)

- 1)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도시개발사업,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급받은 이주자택지 전매가 금지됨
- 2) 반면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되므로, 공공택지 공공성 강화, 투기 방지를 위해 이주자택지를 전매제한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1호·제2호”를 “제2호”로 하고,
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
이 영 시행 당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기로 결정
되었으나 주택건설용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의3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)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<u>제1호·제2호</u>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.	제13조의3(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 <u>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</u>	<삭 제>
2. ~ 10. (생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38